

교직원복리후생규정

제정 2012. 7. 1

- 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'대학'이라 함) 교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** 교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써 관계법규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복리후생 제도에 적용한다.
- 제3조(업무담당부서)** 복리후생 관리 업무는 교육지원처에서 담당한다.
- 제4조(우수사원 및 장기근속자 포상)** 교직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대학발전에 공헌한 자와 장기근속 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5조(건강 및 체력 증진 활동 지원)** ① 대학은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② 대학은 교직원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시간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.
- 제6조(원거리 거주자 지원)** 대학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기숙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- 제7조(근무복 지급)** ① 현장 근무자는 동절기 또는 하절기 근무복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현장근무자의 필요에 의해 근무복 이외에 현장업무에 필요한 물품구입으로 대체 할 수 있다.
② 현장 근무자의 대상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8조(특정일 기념 물품의 제공)** 대학은 명절, 개교기념일, 본인 결혼일, 기타 특정일에 교직원에게 기념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.
- 제9조(상조회 구성)** ① 교직원은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조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② 상조회는 자체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.
- 제10조(기타)** ① 교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여 건강검진, 문화 활동, 도서 및 음반 구입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,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, 지급 대상 및 기타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② 교직원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1조** 이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복리후생 제도는 교직원에게 대학의 사정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